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117 제출연월일 : 2024. 6. 2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외국물품 등에 대한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 등을 폐기한 경우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를 "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한자
-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 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 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1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6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	
실로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	<u><삭 제></u>
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	
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	
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3의2.・4. (생 략)	3의2.·4. (현행과 같음)
5.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멸	<u><삭 제></u>
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	
국물품등을 폐기한 자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제70조(과태료) <u><신 설></u>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u>한다.</u>
	1.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
	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u>제3항까지의</u>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u>제1</u>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를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외작업을 한 자

-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처분한 자
- 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멸 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 국물품등을 폐기한 자
- <u>②</u> ~ <u>④</u> (현행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와 같음)

<u>⑤</u> <u>제4항까지의</u>
<u>제2</u>
<u>항,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u> -